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채 우 진 의원)

의안 번호	23-176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3. 11. .

발의자: 채우진, 권영숙, 고병준, 김승수,
남해석, 백남환, 차해영, 한선미

1. 개정이유

야외활동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(안 제6조제1항제5호)
- 나.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노인 접근성 고려 및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(안 제6조제2항)

3. 관계법령

- 가.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추후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11. 16. ~ 11. 21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5호 중 “노인을 위한”을 “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,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건강증진 등)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</u></p> <p>6.·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6조(건강증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-----</u></p> <p>6.·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,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【관 계 법 령】

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